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16 발의연월일: 2023. 5. 15.

발 의 자:노용호・이명수・지성호

김희곤 · 김영식 · 한기호

박수영 • 박대수 • 엄태영

유경준 • 박덕흠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보유자 및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 목록에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및 은닉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과 같이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여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다목 및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 7702호),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99 35호),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190호),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 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312호), 강민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47호), 권 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1459호),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 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771호), 배진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1860호). 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119호), 윤창 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016호).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3071호),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 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168호), 민병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의안번호 제16464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94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 001호),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04호),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672호),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안」(의안번호 제21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다목 중 "증권"을 "증권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거래내역"을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의"를 "주식 및 가상자산의"로, "주식거래"를 "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거래내역"을 "거래내역"으로, "주식거래의"를 "거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거래"를 "거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2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	3
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	
識財産權)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다
이상의 주식・국채・공채	
·회사채 등 <u>증권</u>	<u>증권 및 「가상</u>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u> 따른 가상자산</u>
라. ~ 카. (생 략)	라. ~ 카. (현행과 같음)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u>주식거래내역</u> 의 신고)	제6조의2(<u>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u>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	<u>내역</u> 의 신고) ①
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	
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사림	남의	주식	의	취
득	또는	양도	에	관힌	· <u>주</u>	식거	래
내용	용을	등록?	기관	에	신고	하여	야
한다	斗 .						

- ② 제1항에 따른 <u>주식거래내역</u> 신고 시 신고대상 <u>주식거래의</u>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u>주식거래</u>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생 략)

<u>주식 및 가상자산의</u>
<u>거 래</u>
② <u>거래내역</u>
<u>거래의</u>
·
③ <u>거래</u>
<u>.</u>
④ (현행과 같음)